

울산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8가합25515(본소), 2019가합12356(반소) 판결 [선급금반환 등 청구의 소 · 공사대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박문학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창 담당변호사 정인철

변론 종결 2020. 10. 22.

판결 선고 2020. 12. 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7,734,69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82,184,64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D 공장과 E시설 간 연결배관공사를 도급받으면서 2017. 12. 29. 공사도급계약을, 2018. 5. 30.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이 변경된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초 공사도급계약	변경계약
계약일	2017. 12. 28.	2018. 5. 30.
공사기간	2017. 12. 22. ~ 2018. 5. 30.	2017. 12. 22. ~ 2018. 9. 18.
공사금액	2,45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2,764,000,000원

나. 피고는 2018. 1.경 원고로부터, 원고가 C으로부터 도급받은 위 공사 중 D 공장내부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50,000,000원, 공사기간 2018.1. 22.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피고는 2018. 1. 22. 위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 수행 확약서를 원고에게 제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공사수행확약서

1. 공사명 : F공사

5. 대금의 지급

가. 매입비 :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익월말 매입처에 직접 지급 요청

나. 노무비 : 익월말 발주처 지급 조건에 따라 직접 지급 요청

다. 용역수수료 : 목적물 완공 후 익월 말 발주처 지급 조건과 동일하게 지급 요청

라.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조정 :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2) 약정금액 산정비율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조정한다.

6. 공사범위

가. 공사명에 포함된 공사 용역 일체(건축내역에 따른 장비, 자재, 운영경비 일체 포함)

나. 시공 인력의 수급, 관리 일체

다. 시공 관리 업무대행 및 업무 지원 용역비 포함

7. 공사조건

가. 현장 투입 인원 등 공사 현장의 투입계획 공정은 사전 보고 후 승인 하에 책임 수행한다.

나. 매입 관련 업무는 사전에 보고하고, 약정된 금액 한도 내에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며
약정금액 초과 투입되는 모든 비용은 확약자가 부담한다.

다. 해당 공사의 추가 정산에 필요한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책임 수행한다.

다. 피고는 2018. 1.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억2,550만 원 상당의 선급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선급금사용계획서, '선금은 본 공사의 자재확보 등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겠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선급금사용각서 및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원고의 반환청구에 지체 없이 선급금을 반환할 것을 확약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선급금반환각서를 제공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피고가 작업인부들을 모집해 오면 원고가 직접 작업인부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작업에 참여한 인부의 급여공수대장을 작성하여 원고 측에 제공하면 원고 소속 직원이 D 출입기록과 위 대장을 비교, 심사하여 심사 결과 출입기록과 대장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피고 측 관리자들에게 그에 대해 소명하도록 하는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해당인부에 대한 급여공수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직접 해당 인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마. 피고는 2018. 7. 19.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물량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공사비의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공사수행확약서 제5항 라목에 따라 정산기준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그 내용과 비용에 따라 조정하기로 귀사와 약정되어있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정산업무가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귀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품목별, 물량별 단가를 검토 중에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회신하였다.

바. 이 법원의 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회신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2. 1.부터 2020. 2. 10.까지 D 공장과 E시설 간 연결배관공사에 관하여 C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별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약정 공사금액보다 1,567,570,945원(= 원고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총 지출금액 3,617,570,945원 - 이 사건 공사 계약금액 2,050,000,000원)을 초과지출하였고, 이 사건 확약서 제7항 나목에 따라 위 추가지출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그중 482,184,648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확약서 제5항에는 원고가 매입비와 노무비를 피고의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 현장의 인원투입계획을 사전 보고한 후 원고의 승인 하에 수행하고, 매입 관련 업무 역시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의 보고에 의하거나 피고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까지 피고에게 그 부담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 공사비용이 피고의 사전 보고에 기해 지출되었거나 피고와 의 협의 하에 지출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금금 중 152,184,648원을 선금금사용각서에 위반하여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확약서 제6항의 시공 인력의 수급,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건비를 허위, 과다책정함으로써 원고가 노무비330,000,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82,184,648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선금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선금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지만 이미 공사가 착공되고 계약당사자들이 도급계약을 해제, 해지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도 수급인에게 선금금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금금 중 152,184,648원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3내지 7,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확약서 작성일인 2018. 1. 22.보다 앞서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배관공사 등을 의뢰하거나 필요한 보온자재등을 공급받은 점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노무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업인부들을 모집하면 원고가 직접 인부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도 직불한 점, ② 피고가 매달 급여공수대장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하면 원고는 D 출입기록과 위 대장을 비교, 심사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 소명절차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인부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③ 원고의 직원 G이 피고에게 송부한 이메일에 기재된 '출입기록 없는 분들의 출입에 대한 자료 요청(근거자료 제시)'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 신속한 제출 요청'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1월 18일, 5월 30일에 보시면 대부분근로시간보다 퇴근을 일찍 하셨는데 1공수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확인해주시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급여공수대장을 토대로 인부들의 작업공수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출입기록과 차이가 있으면 납득할 만한 자료나 소명이 있어야만 해당 인부의 작업공수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인력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노무비를 허위, 과다책정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설계변경, 물량증가로 추가공사를 수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C으로부터 당초 계약대금 2,450,000,000원을 초과하여 559,000,000원을 더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 제5항 라목에 따라 위돈에 피고의 당초 공사대금 대비 원고의 C과의 당초 공사대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피고의 공사대금을 조정한 차액 467,734,693원(= $559,000,000\text{원} \times 2,050,000,000\text{원} / 2,450,000,000\text{원}$)이 피고의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467,734,693원을 이 사건 공사의 추가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추가공사대금 지급 책임의 발생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확약서 제5항 라목에 의하면 설계변경 등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2원고는 2018. 5. 30.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당초 2,450,000,000원에서 2,764,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③ 원고의 직원 H이 C의 I 소장에게 2018. 6. 19. 이메일을 보내면서 '당초 귀사에서 제공한 도면으로 12" 라인 4개시공 과정 중 도면의 약 70%가 불일치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1) 도면 누락으로 인한 추가 시공물량 증가, 2) 도면 및 루트(ROUTE) 변경으로 인한 배관, 보온 물량 증가 및제작업(103회), 3) 도면 및 타입(TYPE) 변경으로 인한 제시공 투입 비용증가, 4) 도면불일치로 인한 재설계 인력 투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 5) 기타 D 요구사항에 의한 물량증가 및 시공방법 변경 등)로 투입비용이 증가되어 2018. 3. 말 기준으로 1차 실정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6월 현재를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발생된 투입물량에 대하여 2차 상세 실정보고를 금월 중 제출하고자 하오니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하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조정 및 정산을 요청한 점, 4 피고는 2018. 7. 19.부터 2018. 8. 17.경까지 원고에게 설계변경, 물량증가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해 온 점, ⑤ 원고는 피고의 위 추가공사대금 지급 요청에 대하여 추가공사대금은 이 사건 확약서 제5항 라목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그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공사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추가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점도 인정된다.

2) 추가공사대금의 범위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앞서 1)항에서 본 사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받은 비율에 상응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당초 공사대금을 조정하고 추가공사대금은 그 조정된 금액만큼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추가공사대금으로 조정받은 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그 액수가 559,000,000원(별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품목명' 기재 각 'D과 E시설 간 연결 배관 신설 PROJECT 중 배관, 보온(공사)'항의 공사대금 2,764,000,000원 및 별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2017. 12. 7.자 공급가액 중 이 사건 공사의 선금 명목으로 발행된 245,000,000원 합계 3,009,000,000원과 당초 공사금액 2,450,000,000원의 차액)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그 액수가 314,000,000원(변경 계약의 공사금액 2,764,000,000원과 당초 공사금액 2,450,000,000원의 차액)이고 2017. 12. 7.자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공사에 특정하여 발행된 것이 아니므로 그 공급가액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C로부터 조정받은 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1)항에서 본 사정에 ① 원고는 C와 사이에 공사대금 증액이 있었던 2018. 5. 30. 이후인 2018. 6. 19.에도 '2018. 6. 현재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한 투입물량에 대해 그 추가분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하며 C에게 공사대금의 조정을 요청한 것에 비추어 원고와 C 사이에는 2018. 5. 30.자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764,000,000원을 초과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별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에 의하면 '2017-12-07'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90,000,000원의 '품목명'이 'D과 E시설간 연결배관 신설 PROJECT 선금'이라고 되어 있는바, 위 선금에는 전체 연결배관 공사 중 이 사건 공사인 배관, 보온 공사부분의 선금과 이 사건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압입, 토목 공사부분의 선금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③ 달리 위 선금에 이 사건 공사 부분의 선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압입, 토목공사 부분의 선금만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선금은 각 공사의 공사대금분에 상응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인바, 원고가 연결배관공사 전체에 관하여 C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합계 6,020,000,000원¹⁾인데(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연결배관공사 전체에 관하여 C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도 이와 동일하다), 위 금액에서 연결배관공사 프로젝트의 선금으로 지급된 590,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중 2,764,000,000원이 이 사건 공사인 배관,

보온공사의 공사대금이고, 나머지 2,666,000,000원이 이 사건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압입, 토목공사의 공사대금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선금 590,000,000원 중 적어도 300,324,125원(= $590,000,000\text{원} \times 2,764,000,000\text{원} / (2,764,000,000\text{원} + 2,666,000,000\text{원})$)의 범위 내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245,000,000원은 이 사건 공사인 배관, 보온공사의 선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C으로부터 조정받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총 3,009,000,000원(= 별지 세금계산서 '품목명'란 'D과 E시설 간 연결 배관 신설 PROJECT 중 배관, 보온(공사)' 기재 각 공사대금의 합계 2,764,000,000원 + 2017. 12. 7.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590,000,000원 중이 사건 공사의 선금에 해당하는 245,000,000원)임이 인정된다.

이 사건 확약서 제5항 라목에 따라 위 돈에 원고와 피고의 각 당초 공사대금 비율을 적용하여 피고의 공사대금 조정분을 산정하면 467,734,693원(= $559,000,000\text{원}(= \text{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C으로부터 지급받은 총 공사대금 } 3,009,000,000\text{원} - \text{당초 공사대금 } 2,450,000,000\text{원}) \times 2,050,000,000\text{원} / 2,450,000,000\text{원}$)이 되므로, 피고의 추가공사대금은 위 467,734,693원과 부가가치세 46,773,469원의 합계 514,508,162원임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추가공사대금으로 467,734,69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원고에게 도달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옥, 판사 조현선, 판사 이현일

1) 부가가치세 미포함